

『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5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6월 4일
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(里)에 걸쳐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교리 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안 제2조의 별표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변경함(안 제2조).
 - 선산읍 교리 일부(26필지 14,979㎡) → 선산읍 동부리 편입
 - 선산읍 동부리 일부(13필지 6,643㎡) → 선산읍 교리 편입
 - 선산읍 동부리 일부(2필지 872㎡) → 선산읍 화조리 편입
 - 선산읍 화조리 일부(15필지 9,181㎡) → 선산읍 교리 편입
 - 선산읍 화조리 일부(3필지 351㎡) → 선산읍 동부리 편입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2항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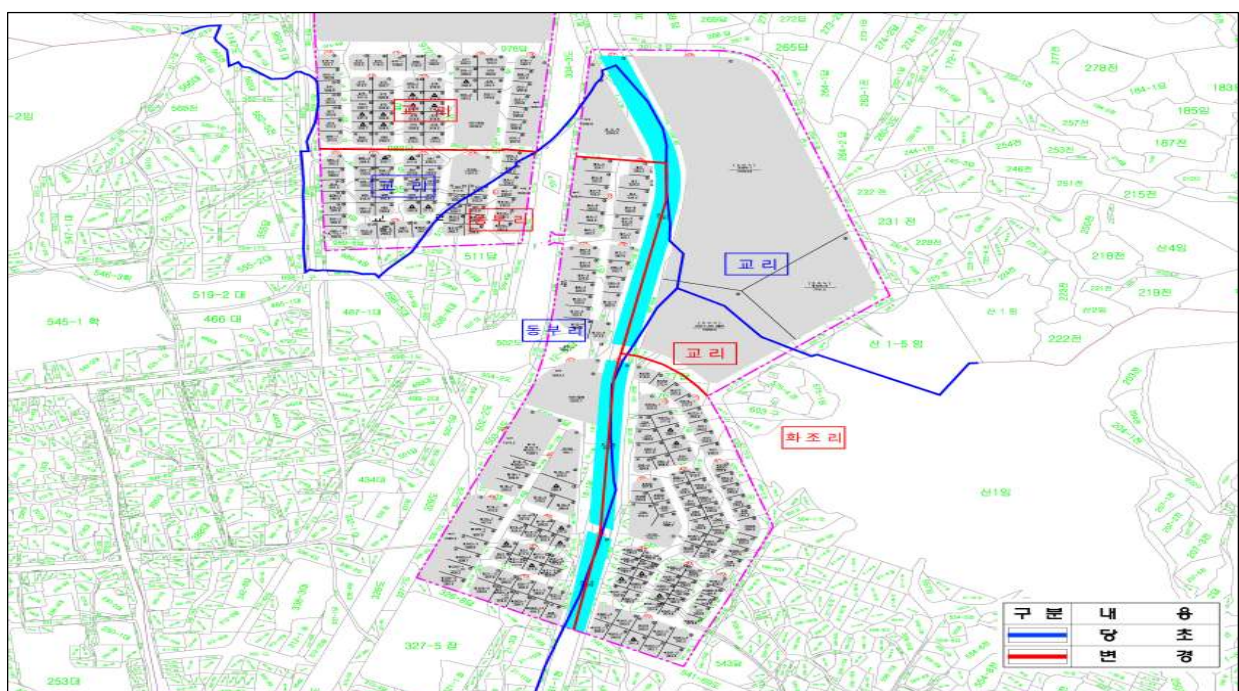
○ 본 조례안은

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(里)에 걸쳐 있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교리 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안 제2조의 별표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임(안 제2조).

- 선산읍 교리 일부(26필지 14,979㎡) → 선산읍 동부리 편입
- 선산읍 동부리 일부(13필지 6,643㎡) → 선산읍 교리 편입
- 선산읍 동부리 일부(2필지 872㎡) → 선산읍 화조리 편입
- 선산읍 화조리 일부(15필지 9,181㎡) → 선산읍 교리 편입
- 선산읍 화조리 일부(3필지 351㎡) → 선산읍 동부리 편입

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의 규정에 따라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의 토지가 2개리에 걸치는 경우 리(里)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